

창원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111296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11129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가단12249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구

변론 종결 2024. 8. 23.

판결 선고 2024. 10. 11.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가단122496 판결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1)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갑 제1호증 차용금변제증서(이하 '이 사건 변제증서'라 한다) 기재 내용에 따라 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건 불성취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C현장 외에 거제현장, 마산현장까지 피고가 온전히 수주할 수 있도록 원고가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변제증서를 작성하였는데 C현장의 1/2만 피고가 수주하였고 나머지 두 현장은 수주 자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증서는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변제증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처남인 D에게 이 사건 변제증서에 따른 돈을 지급하였으나 D이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D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변제증서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민법 제103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적합한 시공능력을 구비한 시공사의 선택을 제한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일반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으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하여 탈세를 유발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499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절친이 근무하는 건설회사가 수주한 공사(C현장)와 관련하여 H이 2억 원을 제시한 상태에서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F이 토사 운반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건설회사 및 H에 부탁하여 이를 성사시켰으며, 피고가 기성금을 받아 원고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것인 점(별지 청구원인 및 원고의 2024. 9. 12.자 반론서 4, 5, 7면), ② 원·피고 사이의 대화 녹취록(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K(H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2,000 해가지고 2억 이야기 할 때 1억 5,000에 해줬으면 이 사람이 감사할 일인데"라고 말하고, 피고가 '기지급금 3,300만 원을 제외하고 6,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원고의 처남 D이 "행님, F로 차용증 하나 적으이소"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③ 이후 F이 원고에게 6,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제증서가 작성된 점, ④ 위와 같은 원·피고의 행위는 적합한 시공능력을 구비한 시공사의 선택을 제한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발생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점, ⑤ 리베이트란 통상 '계약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금 일부를 되돌려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제증서는 F이 원고의 절친이 있는 건설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도와주고 그 대가로 피고와 F로부터 기성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리베이트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이진석

판사김상욱

별지

1) 청구취지 기재 "2022. 6. 1."은 "2022. 7. 1."의 오키임이 명백하다.